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정442-313	(전화번호 266-4168)	전결 규정 <span style="float: right;">(원본) 전결사항</span>
처리기간	+ 정 정 시 정 정		
시행일자	전 결		
보존연한			
보도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계장
기			
관			
	김항오	장봉	조
경유	각안참조	발신	통계
수신			
참조			
제목	도시계획 용도지역(주거용 준주거지역) 변경 지적승인		
(제1안)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동 건			
1. 재개443.2-17 (82. 1. 26)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13호(82. 1. 9)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코져 합니다.			
(제2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도시계획과장			
제목 : 동 건			
1. 건설부고시 제13호 (82. 1. 9)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적			
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1. 고시안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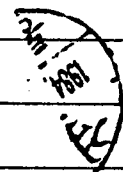
(원본)

검열  
1984. 1. 07  
공서반

이것은 본부에서 받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지적승인 고시안 1부입니다.

1984. 1. 07  
도시계획과장

2.도면 1부.      끝.      13
(제3안)
수신 : 총무처장관
제목 : 관보 게재 의뢰
1.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별첨고시안과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지적승인하였기 관보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안 2부.      끝.
(제4안)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도시계획과장
제목 등건
1. 건설부고시 제13호 (82. 1. 9)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 사였기 보고 합니다.
첨부 : 1°고시안 1부. 
2°도면 1부.      끝.
(제5안)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문화공보관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승인 고시 하였기 시보 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안 1부.      끝.
(제6안)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시민과장	<b>사본</b>
제목	관인 남인 외리	
1.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외거 지적승인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건설부, 총무처에 보고 하는 공문에 관인 남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총무처 공문 1부.	
	2. 건설부공문 1부. 끝	
(제7안)		1.07 7판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동 건	
1. 건설부고시 제13호(82. 1. 9)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한 바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외거 지적승인하고 통보 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할 것.		
수신처	건축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수도공사와, 세무1,2과, 공원녹지과	
(제8안)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용도지역(주거→준주거지역) 변경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13호(82. 1. 9)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에 외거 지적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중구정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미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지적승인 조서		
1984. 1. 7		



변경 명칭	위 차	면 적	비 고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중림동 (175번지, 156번	13,104 ㎡	
	지, 424번지) 일대		
* 별첨 도면 표시와감용(도면생략)			
공.			

